



##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

[시행 2020. 10. 22] [null학교규정 제2260호, 2020. 10. 22, 일부개정]

연구지원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직무)**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별 법학분야 연구의 심화
2. 문제해결 지향의 법학 분야 간 공동연구 [개정 2020. 10. 22.]
3. 인접학문분야와의 학제 간 연구 [개정 2020. 10. 22.]
4. 산·학·연 공동연구
5.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협력
6. 학문후속세대 지원
7. 연구결과의 발표 및 보급

[전문개정 2015. 2. 16.]

**제3조(소장 및 직무대행 등)** ① 연구소의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 또는 관련 학과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[개정 2006. 8. 3., 2008. 5. 9., 2013. 4. 24., 2020. 10. 22.]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 [신설 2020. 10. 22.]

③ 연구소에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,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[신설 2008. 5. 9] [개정 2013. 4. 24., 2020. 10. 22.]

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, 그리고 부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[신설 2020. 10. 22.]

**제4조(조직 등)** ① 연구소에 연구부, 간행부, 법률자문실, 금융법센터, 기술과법센터, 공익산업법센터, 공익인권법센터, 국제통상·거래법센터, 경쟁법센터, 환경·에너지법센터, 헌법·통일법센터, 건설법센터, 고용복지법센터, 법과경제연구센터, 법이론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 [개정 2004. 1. 16., 2006. 8. 3., 2007. 8. 6., 2008. 5. 9., 2009. 8. 7., 2010. 7. 21., 2011. 1. 17., 2013. 4. 24., 2014. 4. 9., 2015. 2. 16.]

② 각 부·실 및 센터에 장을 두며, 연구부와 간행부에 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각 장 및 연구부와 간행부의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,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[개정 2008. 5. 9., 2013. 4. 24., 2020. 10. 22.]

③ 각 부·실 및 센터는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연구부: 법학 각 분야의 연구사업의 수행과 연구발표의 주선, 그 밖의 법학 연구에 필요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2. 간행부: 학술활동 및 연구성과의 공적 간행,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[개정 2006. 8. 3., 2020. 10. 22.]
3. 법률자문실: 법의 실제(사례)에 관한 자료를 수집, 분석하기 위한 자연인 및 법인의 법률문제 자문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4. [삭제 2006. 8. 3.]
5. 금융법센터: 은행, 증권, 보험을 비롯한 금융의 거래 및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, 학술교류,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·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
6. 기술과법센터: 과학과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, 특허법 등에 의한 기술의 보호, 자연과학 및 공학과 법학의 학제 간 연구, 학술교류,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·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7. [삭제 2015. 2. 16.]
  8. 공익산업법센터: 공익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연구, 학술교류,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·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9. 공익인권법센터: 공익의 증진과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한 연구, 학술교류, 정보교환 및 자료 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0. 국제통상·거래법센터: 국제통상법 및 국제거래법과 관련된 법적 연구, 학술교류,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, 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1. 경쟁법센터: 경쟁원리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적 연구, 국내외 학술교류, 학제 간 연구 및 자료수집·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2. 환경·에너지법센터: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방안,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법적 연구, 국제환경외교에 필요한 법적 논리 및 협상전략, 국내외 학술교류, 학제 간 연구 및 자료수집·정리사업 등의 수행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3. 헌법·통일법센터: 남북교류협력의 법적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관·학 합동연구,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법률전문가 양성과 재교육, 남북경협 등 현안이 되는 법적 쟁점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, 남북한 법률 비교·분석 등의 수행과 세미나,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4. 건설법센터: 건축, 도시계획, 건설소송, 재건축·재개발, 주택, 하자담보 등 건설법 분야의 법과 제도 개선, 건설법전문가 양성, 국내외 학술교류, 학제 간 연구 및 자료수집·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5. 고용복지법센터: 고용관계와 복지법 등의 연구, 학제 간 연구, 연구에 대한 아시아의 허브 구축, 전문법률가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교류·자료수집·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6. 법과경제연구센터: 법경제학 및 시장 규율 관련 법분야의 연구, 경제학·경영학 등과의 학제 간 연구, 법경제학 전문 법률가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교류, 자료수집과 정리 등의 사업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7. 법이론연구센터: 기초법분야에 대한 연구·출판·학술발표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관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  18. 행정실: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 및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[개정 2007. 8. 6., 2008. 5. 9., 2009. 8. 7., 2010. 7. 21., 2015. 2. 16., 2020. 10. 22.]
- ④ [삭제 2020. 10. 22.]

**제5조**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 [개정 2008. 5. 9.]

-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(원)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[개정 2006. 8. 3., 2008. 5. 9., 2013. 4. 24., 2020. 10. 22.]
- ③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·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 [개정 2008. 5. 9.]
- ④ [삭제 2008. 5. 9.]
- 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 [개정 2020. 10. 22.]

**제6조**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[개정 2006. 8. 3., 2008. 5. 9., 2013. 4. 24., 2014. 4. 9., 2020. 10. 22.]
1.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 [신설 2020. 10. 22.]
2.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[신설 2020. 10. 22.]

3.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[신설 2020. 10. 22.]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[신설 2020. 10. 22.]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[개정 2008. 5. 9., 2020. 10. 22.]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1. 사업계획의 수립, 예산 및 결산
 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3.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[개정 2020. 10. 22.]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편집위원회)** ① 연구소가 발간하는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  
 ②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 [개정 2006. 8. 3.]

**제8조(공개강좌)**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학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[개정 2020. 10. 22.]

**제9조(운영세칙)**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 [개정 2020. 10. 22.]

**부칙** <제2260호, 2020. 10. 22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